심사보고서

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 228 2019. 7. 19.(금) 정책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**발** 의 자 : 박상돈 의원 등 7인

나. 발의일자 : 2019년 7월 1일

다. 회부일자 : 2019년 7월 3일

라. 상정일자 : 2019년 7월 10일

- 제37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박상돈 의원)

가. 제안사유

O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및 문구를 개정하여 도민의 이해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일본식 한자어 등 정비대상 용어, 문구를 개정함. (안 제 1, 2조)
 - (현행) "~의한" → (개정) "~따른"
 - (현행) "계리(計理)" → (개정) "회계처리"

3. 검토보고 요지 (이강근 수석전문위원)

가. 제출배경

○ 본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(법제처)에 따라 일부 용어 및 문구를 개정하여 도민의 이해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임.

나. 주요내용 검토 및 의견

- 안 제1조는, "제48조의 규정에 따라"를 "제48조에 따라"로 개정한 것으로, 이는 "제48조"라는 조항 자체에 이미 규정의 의미가 포함 되어 있는 바, 중복 사용된 용어인 "규정"을 삭제한 것으로 타당함.
- 안 제2조제6호 및 제7호는, "~의한"을 "~따른"으로 개정한 것으로,
 - "~의한"은 수단과 방법의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때 사용되는 용어이며, '무엇에 의거하거나 기초하다'의 뜻으로 쓰였을 때에는 "~따른"을 사용하도록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것으로 타당함.
- O 안 제2조제7호는,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본식 한자어 표기인 "계리(計理)"를 이에 대응하는 쉬운 한자어인 "회계 처리"로 개정한 것으로 타당함.
 - ※ 일본식 한자어: 직역된 일본어나 일본식 한자어를 뜻이 아닌 한자의 음으로 표기한 것
- 본 조례안은 일본식 한자어 및 문구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한 것으로 내용상 타당하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.

<참고자료> 충청북도금고 개요

※ 충청북도금고는「지방회계법」제38조에 따라 충청북도의 공금에 속하는 소관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·보관, 각종 세입금의 수납, 세출금의 지급 등 관리 업무를 위해 계약형식을 빌어 4년 단위로 지정한「은행법」에 따른 금융기관과 「지방회계법」 제38조제1항 단서 및 각 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, 현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2개, 지역개발기금은 NH농협은행에서, 특별회계 4개와 기금은 신한은행에서 운영 중에 있음.

구 분	담 당 회 계
제1금고 (농협은행)	일반회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(2개) : 소방, 농어촌개발기금
제2금고 (신한은행)	• 특별회계(4개) : 광역교통시설, 의료급여기금, 학교용지부담금, 충청북도균형발전 • 기금(13개)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"생략"

5. 토 론 요 지: "생략"

6. 심 사 결 과: "원안가결"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"없음"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"없음"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O 「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박상돈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28 발의연월일 : 2019년 7월 1일

발 의 자 : 박상돈, 박형용, 심기보,

육미선, 이상욱, 최경천,

연철흠

1. 제안이유

O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및 문구를 개정하여 도민의 이해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O 일본식 한자어 등 정비대상 용어, 문구를 개정함. (안 제 1, 2조)
 - (현행) "~의한" → (개정) "~따른"
 - (현행) "계리(計理)" → (개정) "회계처리"
- 3. **의안전문**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조례안예고 : 해당 없음

나. 협 의 : 기획관리실 세정담당관

다. 비용추계 : 해당 없음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제48조의 규정에 따라"를 "제48조에 따라"로 한다. 제2조제6호 중 "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"을 "제9조제1항에 따른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7호 중 "「지방공기업법」에 의한 지방직영기업"을 "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"로, "계리(計理)"를 "회계처리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정 혂 개 아 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회계 법」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 의 관리를 위한 금고의 지정과 운 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, 효율성, 투명 성 및 민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 로 하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회계 법」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의 제48조에 따라 충청북도의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 를 위한 금고의 지정과 운영에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은 영의 안정성, 효율성, 투명성 및 민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 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 제2조(용어의 정의) -----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 다.

- 1.~5. (생략)
- 6. 일반회계"란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 회계를 말한다.
- 7. "특별회계"란 「**지방공기업** 법」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그 밖 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・세출로 서 일반세입・세출과 구분하여 계리(計理)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.

- 1.~5. (현행과 같음)
- 6. 일반회계"란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.
- 7. "특별회계"란 「지방공기업 법」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 출로서 일반세입・세출과 구분하 여 회계처리 할 필요가 있을 때 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 치한 회계를 말한다.